



## “아버지 유언장에 내연녀가 상속 1순위, 무효 안되나요”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 〈설문〉

70대인 저희 아버지가 40대인 젊은 내연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40대 내연녀와 재혼을 하려 했는데요. 자식들의 반대로 혼인신고 포기 후 내연녀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내연녀는 가끔 병문안을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연녀에게는 저희 아버지 몰래 만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아버지가 쓰러진 사이에 그 남자와 데이트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결국 병원에서 급작스레 세상을 떠났고 이후 공개된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전 재산 약 30억원을 동거녀에게 증여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이대로 허무하게 아버지의 전 재산을 파렴치한 내연녀에게 모두 빼앗기게 되는 걸까요?

▲ MC= 네, 이건 뭐 정말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었어요. 근데 정말 당사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1순위 상속권자는 자녀나 배우자잖아요. 이 경우에 내연녀 상속 1순위가 성립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최승호 변호사(법무법인 온담)= 내연녀는 상속 1순위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법률혼을 했다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 게 몇 개 있는데, 동거를 시작했다, 혼인신고 포기 후 어쨌든 혼인신고를 포기했다, 혼인을 어쨌든 안했다, 그럼 결국은 사실혼 관계 혹은 동거겠죠. 이 경우에는 상속 순위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 1순위 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 1순위는 될 수가 없습니다.

▲ MC= 네,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될 부분인데 또 꽤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연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따로 있을까요?

▲ 최승호 변호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 전처와 한 마디로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자녀 분들의 부모님, 어머니와 이혼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혼을 했으면 사실상 아버지는 법률혼 배우자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순위 상속권자는 당연히 자녀들이 될 겁니다. 자녀들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되는데 지금 이 사안이 유증인지, 그러니까 유언에 의한 증여인지 사인증여인지도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유언장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유언에 의한 증여가 발생을 했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유언장이 적법하게 모두 요건을 갖춰가지고 유증이 발생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상 타인에게도 유언에 따라서 적법한 유언이면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을 이벤트로 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상속을 못 받고 받을 게 없고 유증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일부 지분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MC=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유언장이 키포인트네요. 전 재산 약 30억원 중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으로 만약에 받

을 수 있다면 가족들 혹은 자녀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혹시 어느 정도 될까요?

▲ 최승호 변호사= 상속순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직계비속이나 혹은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냐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직계비속들만 있으니까 직계비속에 어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상속분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계산이 사실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가 예를 들면 2명이다, 2명에서 2분의 1씩 받겠죠. 그럼 30억 원이면 15억씩이겠죠. 이게 법정 상속분입니다. 이 법정 상속분의 다시 2분의 1, 한 마디로 전체 상속금액의 4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30억 원의 4분의 1이면 7억 5천만원 정도 되겠죠. 그래서 7억 5천만원 정도 인정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MC= 네, 그러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면 7.5억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최승호 변호사=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MC= 어쨌든 소송을 해야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멸시효라는 게 또 법에는 있잖아요. 이게 또 따로 있는 건가요?

▲ 최승호 변호사= 네, 소멸시효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혹시나 만약에 발견들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을 합니다.

▲ MC= 네, 어쨌든 소멸시효는 반드시 있고 그 안에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내연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직계가족, 유언장이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3자잖아요. 그런데도 유언에 효력이 있네요?

▲ 최승호 변호사= 왜 유언에 효력이 있냐 하면, 자,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룩한 재산입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생성한 재산들을 처분할 권리는 당연히 나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것을 누군가한테 주고 가겠다는 얘기 없이 죽었을 때 상속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지, 내가 미리 내 재산을 어디다 쓸지에 대해서 결정을 했다면 그걸 먼저 당연히 존중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사실 조금 앞으로만 돌려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사고 막 뭔가 소비를 했습니다. 소비를 30억을 하고 갔어요. 그걸 자녀들이 말릴 수 있나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작권자/법률방송뉴스)